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16
----------	------

2021년 07월 0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안 일 : 2021년 05월 25일
- 다. 회 부 일 : 2021년 06월 01일
- 라. 상 정 일 :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상한)

가. 제안이유

- 서울시 서천연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교육·연수를 통한 행정 능력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시설로서,
- 2021.12.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 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호
- 필요성 : 연수원은 신입자 교육, 부서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연수와 직원들의 휴양·여가 등 후생복지를 위해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써
 -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천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
- 서천군 지역 교육 및 협력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 건물면적 : 연면적 18,925m², 지하2층~지상4층, 4개동
- 부지면적 : 97,684m²(대지 : 43,241m², 임야 : 54,443m²)
- 연수시설 : 객실(151실) 대강당, 세미나실, 중·소회의실 등
- 편의시설 : 식당, 매점, 사우나, 야외 수영장, 노래연습실, PC방 등

마. 민간위탁기간 : 2022. 1.1. ~ 2024. 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5백만원 / 연, ※ 재위탁 공고금액('22년 예산편성)
- 산출근거 : 최근 3년 서천연수원 인건비 및 운영비용 결산기준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1. 5.17(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

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치과진료실·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기타사항

〈 그 간의 위탁경과 〉

- 서천연수원 개원 : '2007. 6. 26
- 최초위탁(1차) : '07.6.1~'10.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2차) : '10.6.1~'13.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3차) : '13.6.1~'16.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4차) : '17.7.1~'18.12.31(수탁업체 : (주)HTC) : 수의계약
※ 재 위탁 공개모집 2회 유찰로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 재 위 탁(5차) : '19.1.1~'21.12.31(수탁업체 : (주)산하에이치엠) : 공개경쟁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서천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2021년12월31일)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서천연수원 현황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월호리621)
- 부지면적 : 97,684㎡(대지 : 43,241㎡, 임야 : 54,443㎡)
- 건물규모 : 연면적 18,925.38㎡, 지하2층~지상4층(4개동)
- 주요시설 : 객실 151실(객실 136실, 단체 연수실 15실)
 - 연수시설 : 대강당, 시청각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등
 - 식음시설 : 대식당, 카페테리아
 - 편의시설 : 편의점, 키즈카페, 노래연습실, PC방, 북카페, 당구(탁구)장, 사우나, 세탁실, 야외수영장, 족구장
 - 주차대수 : 165대(지상)

- 서천연수원은 개원(2007.6.26.)이후,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서천 및 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위탁회수	수탁업체	협약금액	수탁기간	입찰 방법	비 고
서 천	(1차) 최초위탁	(주)HTC	1,980	'07.6.1~'10.5.31(3년)	공개경쟁	
	(2차) 재 위 탁	(주)HTC	1,980	'10.6.1~'13.5.31(3년)	공개경쟁	
	(3차) 재 위 탁	(주)HTC	2,020	'13.6.1~'16.5.31(3년)	공개경쟁	
	(4차) 재 위 탁	(주)HTC	2,018	'16.7.1~'18.12.31 (2년6월)	수의계약 (2회유찰)	시의회동의 09-1005 ('16.3.9)

	(5차) 재 위 탁	(주)산하HM	2,139	'19.1.1~'21.12.31(3년)	공개경쟁	
수안보	(1차) 최초위탁	(주)HTC	1,890	'08.6.1~'11.5.31(3년)	공개경쟁	
	(2차) 재 위 탁	(주)HTC	1,970	'11.6.1~'14.5.31(3년)	공개경쟁	
	(3차) 재 위 탁	(주)오브이룸스	2,013	'14.6.1~'17.5.31(3년)	공개경쟁	
	(4차) 재 위 탁	(주)오브이룸스	2,020	'17.6.1~'19.12.31(2년 7월)	공개경쟁	시의회동의 09-1472('16.12.16)
	(5차) 재 위 탁	(주)오브이룸스	2,236	'20.1.1~'22.12.31(3년)	공개경쟁	

※ 서천·수안보 위탁기간 3년 이하는 회계·결산연도 일치코자 단축 위탁

- 서울시는 서천연수원외에도 수안보연수원과 속초수련원을 포함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천연수원과 수안보연수원은 민간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속초수련원은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속초수련원, 서천연수원, 수안보연수원 운영현황]

구 분	속 초	서 천	수안보
위 치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 1길 99
개원일자	'97. 3. 15('09 리모델링)	'07. 6. 26	'08. 7. 11
객 실 수	80실	151실(단체용 15실)	110실(단체용 10실)
운영형태	직영	민간위탁	민간위탁
건물규모	지하2층, 지상8층 (1동) 연면적 7,243㎡	지하2층, 지상4층 (4동) 연면적 18,925㎡	지하2층, 지상6층 (2동) 연면적 21,731㎡
부지면적	25,936㎡	97,684㎡	59,815㎡
교육시설	강당 (100석) 세미나실 1 (30석) 세미나실 2 (16석)	강당 (200석) 중강의실 1 (40석) 중강의실 2 (40석) 시청각실 (40석) 소강의실 1,2,3 (각 10석)	강당 (150석) 중강의실 1 (65석) 중강의실 2 (138석) 시청각실 (40석) 소강의실 1,2,3,4 (각 10석)
부대시설	사우나, 휴게실, 식당, 매점, 노래방, PC방, 테니스장 등	사우나, 식당, 수영장, 노래방, 매점, PC방, 당구장, 탁구장 등	사우나, 식당, 수영장, 노래방, 매점, PC방, 당구장, 탁구장 등

- 서천연수원 민간위탁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간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며, 행정국은 2021년 10월경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할 계획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위탁금액 : 연3,005백만원(충남형 생활임금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연도 개시 전 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비용 변경
 - ※ 인력개발과에 기 편성된 '21년 예산 중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22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포함 산정
 - 입찰 공고금액, 참가업체 제안가격, 계약심사 결과에 의거 최종 결정
- 위탁사무
 - 서천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
 - 서천군 지역 교육 및 협력 등
- 선정방법 및 제안서 평가 : 공개경쟁입찰
 - 공고금액, 계약방법, 모집참가 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협약체결 내용
 - 평가위원 구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포함
 - 세부 추진절차

```

      graph LR
      A["① 시의회  
동의안  
(’21.6월)"] --> B["② 모집공고  
(’21.9월)"]
      B --> C["③ 모집참가등록  
및  
제안서접수  
(’21.10월)"]
      C --> D["④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21.11월)"]
      D --> E["⑤ 계약 및  
협약심사  
(’21.12월)"]
      E --> F["⑥ 협약체결  
(’21.12월)"]
    
```

- 다만, 서천연수원은 연수시설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고, 한 업체(舊)HTC, 現)산하HM)가 장기수탁(14년 6월)하였는 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기간의 적정성, 관리운영 실태 등에 대한 중간점검과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나.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필요성 및 운영개선 방안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반대로 민간위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사용료 인상 추진을 통한 이용자부담 증가 및 공적인 사명감 부족 등의 단점 또한 있다고 할 것임.

[민간위탁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 경영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 체제 미흡 · 공익성(공공성) 퇴색 ·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운영시 수수료(사용료) 인상 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 장기 위탁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 저조 · 기계설비의 무리한 작동으로 사용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노후화 촉진 · 노조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

- 행정국은 연수원 운영업무는 민간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가 상호 결합하였을 때 만족도 제고 등 운영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이용직원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능 등 민간위탁이 갖는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심 의 일 : 2021.05.17.(월)
- 심의결과 : 적정

-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바,
 - 서천연수원 운영은 연수훈련 뿐만 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의 휴양시설로서 호텔 등 숙박시설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측면에서 볼 때, 민간수행이 보다 효율적이며 민간의 전문성·기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다만, 서울시 3개 연수시설의 연도별 이용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직영으로 운영되는 속초수련원의 경우 직원들의 친근성 등으로 인해 일부 만족도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전문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3개 연수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 현황]

구 분	총 합 만족도	속초	서천	수안보	조사기관
'10년도	83.6	84.9	82.4	83.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2년도	84.1	85.0	84.4	83.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6년도	82.8	84.4	80.6	83.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8년도	81.3	81.0	81.1	81.7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년도	84.2	83.9	82.1	86.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특히, 최근 3년간 서울시 3개 연수시설 자체 이용만족도 조사에서도 서천연수원이 3개 연수원의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행정국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서울시 3개 연수시설 자체 이용 만족도 조사 현황]

○ 3개연수원 평균

(단위 : %)

구분	평균	속초	서천	수안보
3년 평균	95.7	95.5%	94.4%	96.4%
2018년	96.1	96.0%	96.1%	96.1%
2019년	95.6	95.0%	94.3%	96.4%
2020년	94.8	94.9%	88.0%	97.2%

○ 공무원수련원(속초)

(단위 : 명 / %)

구분	모집단	답변인원	답변율	답변내용				만족율
				매우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	매우불만	
'18년	24,900	2,838	11.4%	1,624	1,100	97	17	96.0%
'19년	17,923	2,168	12.1%	1,120	939	95	14	95.0%
'20년	12,457	834	6.7%	714	78	34	8	94.9%

○ 서천연수원

(단위 : 명 / %)

구분	모집단	답변인원	답변율	답변내용				만족율
				매우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	매우불만	
'18년	14,153	2,235	15.8%	1,773	374	78	10	96.1%
'19년	14,428	777	5.4%	567	166	42	2	94.3%
'20년	7,478	548	7.3%	321	161	53	13	88.0%

○ 수안보연수원

(단위 : 명 / %)

구분	모집단	답변인원	답변율	답변내용				만족율
				매우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	매우불만	
'18년	15,255	3,259	21.4%	2,690	442	110	17	96.1%
'19년	16,753	2,923	17.4%	2,434	385	87	17	96.4%
'20년	6,726	1,495	22.2%	1,237	216	39	3	97.2%

- 한편, 서울시 연수시설 운영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규정 변경의 필요성과 함께 연수원의 이용률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코로나 19라는 부정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객실매출, 상품매출, 식음료 매출, 이용자수 감소 등과 같은 결과지표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부정적 환경에 대응하는 자체 개선방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천 연수원 연도별 손익계산서 추이]

○ 손익계산서(서천연수원)

(단위:백만)

과 목	2019년	2020년	2021년 1월말
I .매 출 액	2,970	2,354	170
객 실 매 출	1,945	2,001	170
상 품 매 출	398	186	0
식 음 료 매 출	616	161	0
기 타 매 출	12	6	0
II .매 출 원 가	498	188	0
III .매 출 총 이 익	2,472	2,166	170
IV .운 영 관 리 비	2,510	2,091	160
V .영 업 이 익	- 39	73	10

[출처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서천연수원-」, 21페이지]

- 둘째, 서천연수원은 2020년 민간위탁 지도점검결과, 총 15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중 13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나, 지적사항 중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음식폐기물 처리개선 사항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참고자료).

〔2020년도 민간위탁 연수원(서천수안보) 지도점검 결과보고〕

구 분	서 천	수안보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의 벽체 등 청결상태 및 접시 그릇 수납 상태 미흡 ○ 식자재 유통기한 표시 미 부착 ○ 회계 및 기타서류 보관상태 미흡 ○ 대강당 무대 청결 및 악성상태 미흡 ○ 하늘관 야외 자재 정리정돈 미흡 ○ 다산관 사우나 앞 계단 및 창의관 야외 계단 안전 보호조치 미흡 ○ 남자사우나 거울 반사코팅 벗겨짐 ○ 키즈카페 벽체 패널 벗겨짐 ○ 객실 내 스프링클러 덮개 및 환기구 탈락 등 ○ 창의관 지하 1층 피난유도등 부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강당 무대 청결 및 악성상태 미흡 ○ PC방 벽체 시트 벗겨짐 ○ 노래방 바닥 물딩 들뜸 및 시트지 벗겨짐 ○ 숲솔관 514호 욕실타일 파손 및 315호 스프링클러 덮개 탈락 ○ 중강의실 인테리어 패널 오염 및 탈락 ○ 식당 조리기구(숟) 청결(부식)상태 미흡 ○ 창의관 소회의실 시건장치 불량

- 또한, 계속적 민간위탁으로 운영 할 경우, 행정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 위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16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 서천연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교육·연수를 통한 행정 능력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시설로서,
- 나. 2021.12.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 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호
 - 필 요 성 : 연수원은 신입자 교육, 부서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연수와 직원들의 휴양·여가 등 후생복지를 위해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써

-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천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
- 서천군 지역 교육 및 협력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 건물면적 : 연면적 18,925m², 지하2층~지상4층, 4개동
- 부지면적 : 97,684m²(대지 : 43,241m², 임야 : 54,443m²)
- 연수시설 : 객실(151실) 대강당, 세미나실, 중·소회의실 등
- 편의시설 : 식당, 매점, 사우나, 야외 수영장, 노래연습실, PC방 등

마. 민간위탁기간 : 2022. 1.1. ~ 2024. 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5백만원 / 연, ※ 재위탁 공고금액('22년 예산편성)
- 산출근거 : 최근 3년 서천연수원 인건비 및 운영비용 결산기준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1. 5.17(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전·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치과진료실·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기타사항

〈 그 간의 위탁경과 〉

- 서천연수원 개원 : '2007. 6. 26
- 최초위탁(1차) : '07.6.1~'10.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2차) : '10.6.1~'13.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3차) : '13.6.1~'16.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4차) : '17.7.1~'18.12.31(수탁업체 : (주)HTC) : 수의계약
※ 재 위탁 공개모집 2회 유찰로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 재 위 탁(5차) : '19.1.1~'21.12.31(수탁업체 : (주)산하에이치엠) : 공개경쟁

※ 작성자 : 인력개발과 후생팀 김형태 (☎ 2133-5783)